

| | | | |
|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 | <h1 style="margin: 0;">교원징계위원회 규정</h1> | 문서번호 | MSU- |
| | | 제정일자 | 2021. 02. 01 |
| | | 최종개정일자 | |
| | | 담당부서 | 교무입학처 |

제1조(적용 및 목적)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제 62조 및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69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과학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에 재직중인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.)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징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·위촉한다.

제3조(위원장선출 및 직무)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외부위원의 임기 등)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
5.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
제5조(제척 및 기피)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으면 그 징계 사건의 심리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·의결을 기피하여야 한다.

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것이 우려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징계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리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⑤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, 징계사안을 심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·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징계 사건의 조사 등) ①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)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징계대상자 출석)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되,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③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는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징계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징계의결)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면 지체 없이 주문(主文)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「사학법」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, 지체 없이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징계의결의 기한)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2조(징계의결 할 때 정상 고려 등)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, 근무성적, 공적, 누우치는 정도, 징계요구 내용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
제14조(준용규정) 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,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징계령,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수당지급) 위원과 간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